

# 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[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]

## 1.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제품명 : BYK-332  
나. 제품의 용도 및 사용상의 제한  
1)제품의 용도 : 페인트용 첨가제  
2)사용상 제한 : 자료없음  
다. 제조자 정보  
1)회사명 : BYK-Chemie GmbH  
2)주소 : Abelstrasse 45, 46483 Wesel, Germany  
3)전화번호 : +49 281 670-0  
4)담당자 : Regulatory Affairs  
5)긴급연락처 : +49 281 670-23532  
라. 공급자 정보  
1)공급회사명 : 유니소재(주)  
2)주소 :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령리 581  
3)전화번호 : (031) 766-8341  
4)담당부서 : 영업부  
5)담당자 : 전명진

## 2. 유해, 위험성

- 가. 유해, 위험성 분류  
1)물리적 위험성 분류 : 분류되지 않음  
2)건강 유해성 분류 : 해당없음  
3)환경 유해성 분류 : 해당없음  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
1)그림문자: 자료없음  
2)신호어: 자료없음  
3)유해, 위험 문구: 자료없음  
4)예방조치문구  
-예방: 자료없음  
-대응: 자료없음  
-저장: 자료없음  
-폐기: 자료없음  
다. 유해, 위험성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, 위험성  
-NFPA 지수: 보건-자료없음 화재-자료없음 반응성-자료없음

## 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| 화학물질명 및 관용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CAS 번호 | 함유량(%) |
|---|--------|--------|
| Polyether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 | 영업비밀   | 100.0  |

## 4.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 흐르는 물에 세척할 것.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.  
손상되지 않은 눈을 보호할 것. 행구는 동안 눈을 크게 뜰 것.  
만약 자극이 계속 되면 전문의와 상담할 것.  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 오염된 옷과 신발은 즉시 벗을 것. 비누와 충분한 물로 세척할 것

|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|--|
| 다. 흡입했을 때          | 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<br>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.<br>의식이 없을 경우 회복이 가능한 자세와 의사의 조언을 구할 것  |
| 라. 섭취했을 때          | 징후가 계속 될 경우 의사와 상담할 것.<br>입을 행ぐ 것. 기도를 깨끗이 유지할 것<br>우유나 알콜음료를 먹지 말 것.<br>의식이 없을 경우 입안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말 것.<br>징후가 있을 시 의사와 상담할 것. |
| 마.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| : 진료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사에게 보일 것.<br>지켜줄 사람이 없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말 것  |

## 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적절한(부적절한 소화제)        | : 주변환경 및 지역상황에 적합한 소화제 사용할 것<br>-부적절한 소화제: 자료없음           |
|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| : 연소시 자극성 증기 발생   |
| 다.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| : 산소호흡기가 부착된 방화복 착용 및 특수보호장비 사용할 것<br>화학적 화재의 표준 절차를 지킬 것 |

## 6.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| :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<br>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<br>발화원을 모두 제거할 것  |
| 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| : 누출물이 하수구 혹은 지표수/지하수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<br>누출량이 많을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/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           | : 형겁(천), 양털과 같은 흡착제로 누출물을 흡착시켜 수거할 것<br>처분을 위해 밀봉된 용기는 적절한 곳에 보관할 것<br>적절한 장비를 이용하여 수거할 것<br>폐기물 관리법(환경부)에 의거 처리할 것 |

## 7. 취급 및 저장 방법

|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
| 가. 안전취급요령 | : 작업장 내 노출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말 것.<br>눈과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피할 것. (신체보호 위해 8번항 참고)<br>증기/분진을 흡입하지 말 것<br>사용 전 취급요령을 획득할 것-노출을 피할 것<br>작업장 내 흡연 및 취식을 금함.<br>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<br>작업장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폐수는 적절한 기준에 맞추어 처리할 것<br>화재 및 폭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:<br>- 발화원으로부터 멀리할 것, 금연<br>- 열로부터 보호할 것<br>-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것<br>- 어떤 다른 백열성의 물질 또는 노출된 불꽃에서 뿌리지 말 것 |
| 나. 보관 방법  | : 인화성물질로부터 격리하여 보관할 것, 금연  |

용기는 완전히 밀봉하여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할 것  
전자설비 혹은 작업원료는 물질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

## 8.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1)국내규정(고용노동부)

-자료없음

2)ACGIH 규정

-자료없음

3)생물학적 노출기준

-자료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: 지역배기장치 또는 공기 중에 추천된 노출하한 이하로 비산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공학적 조절장치, 먼지, 연기, 연무 등이 생겼을 시 비산된 것이 노출제한 이하로 되도록 배기장치를 사용할 것

다. 개인보호구

1)호흡기 보호

: 적절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것.

일반적으로 개인호흡기보호구는 요구되지 않음

2)눈 보호

: 보호안경을 밀착 착용할 것

3)손 보호

: 장갑재질 :

- 적절한 장갑을 선택하는 것은 재질 뿐 아니라 품질의 추가 인증에도 관련이 있으며 제조자에 따라 다양함

- 본 제품은 몇 개의 물질로 이루어진 제재이므로 장갑 재질의 내성을 미리 계산할 수 없으며 사용 전에 확인하여야 함

장갑 재질의 침투시간 : 120분(Material: PVC disposable gloves)

4)신체보호

: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(불침투성 보호의)를 착용할 것

라. 위생상 주의사항

: 휴식 전 및 작업 종료 시에 손을 씻을 것

작업 중 취식, 취음, 흡연하거나 냄새를 맡지 말 것

음식물, 음료 및 사료와 격리하여 보관할 것

모든 오염된 의복은 즉시 벗을 것

## 9. 물리. 화학적 특성

가. 외 관 : 물리적 상태: 액상, 색상: 옅은 갈색

나. 냄 새 : 무취

다. 냄새 역치 : 자료없음

라. p H : 자료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: 자료없음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자료없음

사. 인화점 : >100°C

아. 증발속도 : 자료없음

자. 인화성(고체, 기체): 자료없음
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: 자료없음

카. 증기압 : <1 hPa at 20°C

타. 용해도 : 물에 불용성

파. 증기밀도 : 자료없음

하. 비중 : 1.03g/cm<sup>3</sup> at 20°C
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: 자료없음

너. 자연발화 온도: >200°C

- 더. 분해온도 : 자료없음  
 러. 점도 : 자료없음  
 머. 분자량 : 자료없음

## 10. 안정성 및 반응성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화학적 안정성        | : 열분해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- 설명서에 따라 사용할 경우 분해없음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-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고 저장할 경우 분해없음 |
| 나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 | :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| : 탄소산화물                    |
| 라. 반응시 유해물질 발생가능성 | : 자료없음                     |

## 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          |        |
| 1) 호흡기를 통한 흡입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2) 입을 통한 섭취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3) 피부 접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4) 눈 접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나. 단기 및 장기노출에 의한 지연, 급성 영향 및 만성 영향 |        |
| 1) 급성독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2)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3)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4) 호흡기과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5) 피부 과민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6) 발암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7) 생식세포 변이원성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8) 생식독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9) 특정표적장기독성(1회노출)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10) 특정표적장기독성(반복노출)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11) 흡인유해성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
## 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가. 수생, 육생 생태독성 |        |
| 1) 어류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2) 갑각류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3) 조류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나. 잔류성 및 분해성   |        |
| 1) 잔류성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2) 분해성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다. 생물 농축성      |        |
| 1) 생분해성        | : 자료없음 |
| 2) 농축성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라. 토양 이동성      | : 자료없음 |
| 마. 기타 유해 영향    | : 자료없음 |

## 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물관리법상규제현황 : 지정 폐기물임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나. 폐기 방법    | : 제품은 지방법에 저촉이 안될 경우 소각처리할 수 있으며 빈용기는 등록업체에 의해 처리해야 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폐기시 주의사항 | : 남아있는 내용물을 비울 것<br>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폐기 처리할 것<br>빈 용기는 재사용하지 말 것<br>빈 용기는 태우거나 절단토치를 사용하지 말 것 |

#### 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|   |        |
|---|--------|
| 가. 유엔번호(UN NO.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나. 적정선적명  | : 자료없음 |
| 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라. 용기 등급  | : 자료없음 |
| 마. 해양오염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|
| 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: |        |
| -화재시 비상조치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료없음   |
| -유출시 비상조치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자료없음   |

##### Land transport

ADR/RID:

위험물질 아님

##### Sea transport

IMDG:

위험물질 아님

##### Air transport

IATA-DGR:

위험물질 아님

#### 15. 법적 규제 현황

|  |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|
| 가.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     |
| 나. 화학물질등록평가법(화평법) 및 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에 의한 규제: |             |
| 사고대비물질: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금지물질: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허가물질: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제한물질: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유독물질: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| : 제4류 제3석유류 |
| 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| : 자료없음      |
| 마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                     | :           |

1999/45/EC, 67/548/EEC에 의한 분류 :

EC-directives 67/548/EEC 또는 99/45/EC의 기준으로 볼 때 위험물질이 아님.

EC 규정 No 1272/2008에 의한 라벨링 & 분류:

EC 규정 No 1272/2008의 기준으로 볼 때 위험물질 아님.

## 16. 기타 참고 사항

### 가. 자료의 출처

BYK-Chemie GmbH에서 작성한 영문 MSDS

KOSHA(한국안전관리공단)

NCIS(화학물질정보시스템)

NITE(일본,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)

EU Directive 67/548/EEC(Annex-I)

나. 최초 작성일자: 2008년 3월 31일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개정일자: 2016년 07월 18일(REV 3)

라. 기타: 해당없음

\* 이 MSDS는 현재 BYK-Chemie사의 최선의 지식을 근거로 작성된것이며, 이것이 제품의 특성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된것은 아님.